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

*공고 내용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이 공연예술 유통플 랫폼을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기초예술 공연이 유통될 수 있도록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공모의 내용을 변경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2025년)	2026년
지원신청	O 공연단체 또는 공연시설의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O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이 공연예술유통 플랫폼에 가입하여 정보등록 후 지원사업 신청
지원예산	O 총 260억원 - 사전매칭 180억원, 사후매칭 80억원	O 총 250억원 내외 (예정) * 잔여 예산 발생 시, 공연시설로부터 미선정된 추천공연을 추가 신청받아 예산소진 예정
공모방식	O 1차 사전매칭, 2차 사후매칭 순차 운영	O 사전+사후매칭 결합된 통합공모 운영
신청규모	○ 공연단체당 총 10건, 총 10억원 ○ 공연시설당 총 10건, 총 10억원	○ 공연단체당 최대 2개 공연작품 등록 ○ 공연시설당 최소 3개, 최대 7개 공연작품 신청
신청방식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가 사전 협의하여 공모 신청하는 사전매칭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선정한 공연작품을 공연시설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사후매칭	○ 공연단체가 지원사업 대상 공연등록 후, 공연시설이 등록된 공연 중 최대 7개 작품 신청 ○ 공연시설의 공연작품 신청현황에서, 공연단체가 작품 1개당 최대 5개 공연시설 선택 ○ 공연시설이 1.5억원 한도 내에서 최종 확정된 공연에 대해 지원사업 신청
지원심의	O 장르별·분야별 전문가의 공연단체, 공연작품, 공연유통 우수성 심의 * 장르별·지역별 균형 안배 우선 고려	O 별도의 심의 없이, 공연단체, 공연작품, 공연시설의 지원신청 가능 요건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검토
지원규모	O 공연시설·공연단체당 총 10건, 총 10억원까지 지원	○ 공연시설당 최대 1.5억원 지원 ○ 공연단체당 최대 5억원 지원 ○ 공연작품당 최대 5개 공연시설 지원

□ 사업 목적

o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을 통해 공연시장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공연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공연산업의 활력 제고

□ 사업 기간

ㅇ 2026년 1월 ~ 12월 (공연 기간: ~ 2026년 12월 20일(일) 종료)

□ 사업예산

ㅇ 총 250억 원 내외 지원 * 변동 가능

□ 사업 신청

○ (온라인 신청) 공연예술유통 P:art:ner (https://gokams.or.kr/partner)

「공연예술유통 P:art:ne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단체와 공연시설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공연유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한 B2B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단체·작품·시설 정보를 표준화해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통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공연정보와 유통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절차) 회원가입·정보등록 → 공연단체 공모신청 → 공연시설 사업신청 및 공연선택 → 공연단체 공연시설 선택 → 공연시설 신청공연 및 지원금 확정



* 공연단체 신청 절차				
① [1단계]	공연유통플랫폼에 '공연단체*' 회원으로 가입			
회원가입				
†				
② [1단계] 정보등록	'단체'와 '공연' 정보등록			
	+			
③ [3단계]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연작품을 공연단체			
공연신청	당 최대 2개까지 신청			
†				
	공연작품에 대한 공연시설의 신청현황(5단계) 확인 후, 공연작품당 최대			
	5개까지 공연시설을 선택			
○ FZEF게1	* 공연단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므로 공연단체가 공연시설 선택 시, 공연작품에			

(4) [7단계] * 공연단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므로 공연단체가 공연시설 선택 시, 공연작품에 대한 사업참여 여부, 공연 일정, 무대 규모, 예산 등을 공연시설과 상호 확인 권장 * 공연시설당 지원금은 최대 1.5억 원이며, 공연단체로부터 선택받은 공연작품들의(시설당 최대 7개) 예산 총합이 이를 초과할 경우, 8단계에서 공연시설이 예산 범위 내공연작품을 최종 선택

공연시설이 최종지원 신청한 결과(8단계)를 통해 공연시설-공연단체-공 ⑤ [10단계] 결과 확정 이 연작품 확정 및 공개

* 공연시설 신청 절차

공연유통플랫폼에 '공연시설*' 회원으로 가입 ① [1단계]

회원가입 │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시설DB에서 검색되어야 회원가입 가능

② [1단계]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등록*

정보등록 *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 미제공 시, 지원사업 신청 불가

지원 신청하는 공연장의 시설조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연작품 목 록'*에서 관심 공연검색 후, 신청페이지에서 관심 공연의 지원신청정보 (과거 실적, 예산, 일정 등) 확인

※ 플랫폼 공지사항에 별도 공개, 공연단체가 등록 신청한 공연은 장르·예산·실적·기관추 천 등을 기준으로 공연작품 목록을 제공하여, 공연시설의 공연작품 선택 편의성 제고

* 추천공연 목록제공(문체부 유관기관 공연 제작·유통 사업선정 작품)

- 추가 공모 시, 추천목록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를 정책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미선정 된 공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 예정
- 단, 하기 공연작품도 공모 신청을 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

③ [5단계] 공연검색

추천기관	대상 사업	대상 공연작품		
예술경영	공연예술 지역유통	'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24~'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공연 중 좌석 규모별(300석 미만/300석 이상) 유료티켓판매 상위 50% 또는 객석점유율 상 위 50% 공연		
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	`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24~`25년 팸스초이스 선정작		
	장르별 시장 거점화	'25년 장르별 시장 거점화 선정 축제 추천작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ing	`24~`25년 세실 창작ing 선정 추천작		
지자체 지역대표 예술단체		KOPIS에 집계된 `24~`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의 대표 공연 중 `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작품		
한국문화 공연예술 예술위원회 창작산실 '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23~'24년 올해의 신		`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23~`24년 올해의 신작 선정작		
한국문화예술 코카카아트 회관연합회 페스티벌 `25년 8월 ⁷		`25년 8월까지 기공연된 쇼케이스 선정작		

공연시설은 '신청공연 장르 구성 조건*'을 고려하여 공연작품을 최소 3개 이상 최대 7개까지 선택. 단. 특정 장르 쏠림을 막기 위해. 첫 번째로 선 택하는 작품은 뮤지컬을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 반드시 선택 필요

④ [5단계] 공연 선택

* 지원사업 신청공연 장르 구성 조건

- O (지원 한도) 최대 지원금 1.5억 원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장르 공연을 최소 3개 신청해야 하며, 최대 7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O (장르별 신청 제한) 인기 장르 편중을 해소하고자, 장르별 선택공연을 아 래와 같이 제한함

분야	장르	신청 제한		
(가) 분야	∅무용, Ϣ연극, ☞음악, ☞전통	1순위 우선선택 장르별 최대 2개 공연까지 신청 가능 *단, 무용(발레)은 최대 1개 공연만 신청 가능		
(나) 분야 3 뮤지컬 최대 1개		최대 1개 공연까지 신청 가능		
※ 공연작품 장르 구성 신청 예시				
가능	3건: 1순위(ఄ 음악), 2순위(♣뮤지컬), 3순위(ఄ 연극) 4건: 1순위(ఄ 무용(발레)), 2순위(ఄ 전통), 3순위(ఄ 연극), 4순위(ఄ 전통) 5건: 1순위(ఄ 연극), 2순위(♣뮤지컬)), 3순위(ఄ 무용(한국)), 4순위(ఄ 전통), 5순위(ఄ 연극)			
불가능	5순위(④연극) 2건: 1순위(❸전통), 2순위(��뮤지컬) ※ 최소신청 건수 미충족(최소 3개 이상 공연 선택 필요) 3건: 1순위(��뮤지컬), 2순위(��뮤지컬), 3순위(⑭연극) ※ 우선 선택 장르 미충족((나)분야 1순위 선택 불가) ※ (나)분야 2개 선택 불가 3건: 1순위(⑭연극), 2순위(��뮤지컬), 3순위(⑭연극) ※ 장르조건 미충족(서로 다른 장르 공연을 3개 이상 선택 필수) 5건: 1순위(⑭연극), 2순위(❸전통), 3순위(⑭연극), 4순위(⑭연극), 5순위(⑭연극) ※ 장르조건 미충족(서로 다른 장르 공연을 3개 이상 선택 필수) ※ 장르조건 미충족(서로 다른 장르 공연을 3개 이상 선택 필수) ※ 장르조건 미충족(서로 다른 장르 공연을 3개 이상 선택 필수) ※ 장르조건 미충족(서로 다른 장르 공연을 3개 이상 선택 필수)			

※ 공연시설이 4단계에서 공연작품 선택 시, 이후 6단계에서 공연단체도 공연작품 유 통을 희망하는 공연시설을 최대 5개 내에서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단체와 공연작품에 대한 사업참여 여부, 공연 일정, 무대 규모, 예산 등 사전 확인 권장

⑤ [9단계] 지원신청

공연시설은 공연단체가 확정한 유통 가능한 공연작품을 확인 후, 최대 지원금 1.5억원 내에서 공연을 선택하여 지원신청

※ 단, 공연단체가 확정한 공연작품의 예산 총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선 택 절차 없이 결과를 확정하며,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연시설은 최소 2 개 이상의 공연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

결과 확정

⑥ [10단계] 공연시설이 최종지원 신청한 결과(8단계)를 통해 공연시설-공연단체-공 연작품 확정 및 공개

□ 사업 신청 대상

- ㅇ (공연단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
- ㅇ (공연작품) 제작 완료 후 유료로 상연된 지원신청 자격요건을 충 족하는 기초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작품
- ㅇ (공연시설) 지원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외 지역 소재 문 예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 *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공연시설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지원 신청 예시

운영주체 : (재)예경문화재단

운영 공연시설: 예경아트센터, 예경시민회관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 (1)예경아트센터 (2)예경시민회관 각각 신청 및 지원
- → 단, 지원금은 운영 주체인 (재)예경문화재단(예경아트센터), (재)예경문화재단(예경시민회관)으로 교부함

□ 세부 공모 일정



□ 지원 규모

- (공연단체 기준) 단체당 최대 2개 공연작품, 최대 5억 원 이내 지원
- o (공연작품 기준) 작품당 최대 5개 공연시설에서 공연유통 지원
- (공연시설 기준) 시설당 최소 2개 공연작품*, 최대 1.5억 원 이내 지원
 - * 단. 공연단체가 확정한 유통 가능한 공연작품이 1개인 경우 예외 지원
 - 공연시설은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10% 이상을 필수로 자부담 편성해야 하며, 공연 용역비를 자부담 일부로 편성 가능
 - * 단, 자부담금을 공연 용역비로 전체 편성은 불가
 - 공연시설은 최종 공연 확정 단계(9단계)에서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단체가 최초 산정한 공연 용역비를 10% 이내 가감하여 공연 용역비 조정 가능
- (지원예산) 총 250억원 내외 지원금에서 지원신청 공연시설 수에
 따라 공연시설당 총 지원액* 변동 가능(최대 1.5억원 이내)

- * 공연시설별 최대 지원금액 = 250억 원 ÷ 지원신청 공연시설 수 단, 공연시설의 보조금 신청금액이 최종 산출된 공연시설별 최대 지원금 액보다 작은 경우. 가감 없이 신청금액 지원 가능
- * 지원액 감소 시, 공연시설은 자부담을 추가 편성하여 용역비를 보전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공연단체가 최초 신청한 공연 용역비의 10% 이내에서가 가감하여 용역비 신청 가능

□ 지원 방식(무심의·자율 매칭)

-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지원 신청단체, 신청공연, 신청 공연시설이 지원요건에 적격한 경우, 총예산 내에서 공연시설과 공연단체가 상호 선택한 공연을 지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시설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공연시설은 공연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사업을 책임 운영

□ 지원내용 및 절차

- ㅇ (지원 내용) 공공 공연시설의 사업비(공연 용역비) 일부 지원
- (지원 절차)

<주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공연시설

→ 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지급 <용역계약자> 공연단체

□ 지원 신청자격

- (공연단체) 기초공연예술분야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기획제작사
 -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면세·과세·간이)
 -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공시설과 용역 계약 체결 가능한 단체
 -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단체)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단체)

-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단체
- * 고유번호증만 보유 시, 참여 불가하며,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필요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 지역 순회공연 운영대행사

○ (공연작품) 기초공연예술분야(무용, 뮤지컬, 연극, 음악, 전통) 공연

- 장르 : 무용, 뮤지컬, 연극, 음악, 전통
 - * 다원/복합장르는 주된 1개 장르로 선택하여 신청
-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작품
- 1) 기존 상연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유통이 가능한 작품
- 2) '25년 8월까지 1회 이상 전막 유료 공연 이력이 있는 공연
- 3) 공연 신청예산을 공연시설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공연
- 4) 신청공연의 과거 실적(티켓매출액, 관객수)을 공연시설 대상으로 공개 가능한 작품
-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작품)
- 기초 공연예술 분야 외 내용이 주된 공연(대중음악, 토크콘서트, 마술쇼, 버블쇼, 개그 공연, 무예, 스포츠댄스, 아이스 갈라, 영화·게임 음악, 시낭송회, 캐릭터공연 등)
- 전막 공연 외 공연(쇼케이스, 트라이 아웃, 갈라 콘서트)
- 내한공연, 라이선스, 리사이틀 공연
- 국·공립예술단체의 공연
-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종교기관 및 소속 단체 관련 행사성 공연

ㅇ (공연시설)

-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연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용역비 집행이 가능한 시설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한 공연시설 (예, 총사업비 100% = 자기부담금 10% + 지원신청액 90%)
- 공연예술플랫폼 내 공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공연시설과 공 연장 정보를 제공한 시설
 - * 필수 제출 기초 무대기술자료

분류	필수 제출자료
무대	무대장치 목록, 평면도 및 단면도, 배치도
기계	무대기계 장비 목록
조명	조명 장비 목록
음향	음향 장비 목록

- * 상기 목록 외에 정보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사업 신청 가능
- * 추후 공연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요구자료 제공 필수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시설)

-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 및 국립시설, 민간시설

(공통 필수 요건)

- 공연예술 유통플랫폼(공연예술유통 P:art:ner) 가입 및 신청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사업 내용(일시, 장소, 예산, 수익분배, 역할 등)

- 에 대한 상호 사전확인 필수
- 공연단체는 공연시설과 공연 진행에 필요한 무대, 장비 등 사전 확인 필수
- 국가계약법 및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매뉴얼에 근거한 공연단체 용역 계약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용역 계약을 위한 서면 계약서(문화체육관 광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가능) 작성 필수
- 공연단체 용역비 선금 지급 권장
- 유료 공연 필수(정가 10,000원 이상/할인정책 적용 가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시스템 이용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판매실적 공개 필수
-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통)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통)

- 공연단체 또는 공연시설의 지역축제, 발표회, 정기연주회 등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또는 사업
- 동일한 공연시설에서 동일 작품을 2년 내('24-'25년) 상연한 경우

□ 지원 적격성 검토

o (검토방식) 공연예술유통 플랫폼 등록 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사업 신청대상인 공연단체, 공연작품, 공연시설의 지원사업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신청 승인

ㅇ (검토 기준)

-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이 지원 가능한 대상 여부
-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공연작품 인지 여부
- 공연단체, 공연시설, 공연작품의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 공연단체, 공연시설, 공연작품의 지원 결격 여부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공연단체 및 공연시설의 신청예산의 적정성 여부

□ 지원 유의사항

-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가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 지원확정 후, 지원 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가능

- · 기획재정부「보조금법」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기관
-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예산편성 세부기준

- ㅇ 총사업비의 10% 이상 공연시설 자부담금 책정 필수
- < 공연단체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지원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 ※ (공연단체 공연료 유의사항) 공연단체 공연료 책정 시 실제 소요 단가보다 부풀려 책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향후 유통사업 지원에서 배제함
 - 해당 공연단체의 작품 관련 정보(예산, 참여자 등)는 국회 등에서 정보 제출 요구 시 상시 공개될 수 있음

목	세목	보조금	비고
	일반 수용 비 (01)	- 연출, 출연진 등 전문인력 사례비 - 홍보·마케팅비 - 물품운송비	
<u> </u>	공공 요금 및 제세(02)	- 상해보험료(필수)	* 사업참여자 가입 필수
① 운영비 (210)	임차료 (07)	- 연습공간 임차료 - 장비 임차료	* 신청주체 소유·관리 연습공간 임 차료는 지급 불가
	복리후생비 (12)	-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필수)	*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 담분 납부
	일반용역비 (14)	- 조명 용역비 - 무대 용역비 - 음향 용역비	* 소모성 공연소품 외 투어공연을 위한 신규 무대 및 소품, 의상 제작비 편성 불가
②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기준 준수
③일반관리비		- 기타 간접 경비	* ①+② 총액의 5% (단, 최대 1,500만원)
④단체이윤		- 단체 이윤 책정	* ①+②+③ 총액의 8% (단, 최대 1,500만원)
⑤ 부가가치세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편성 불가	* ①+②+③+④ 총박의 10% (간이과세자도 동일)

< 공연시설 예산편성 항목 예시 >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지원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목	세목	자부담금	보조금	비고
운영비	일반 수용 비 (01)	- 비상근인력(단기인력, 전 - 홍보비(리플렛 및 현수)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	
(210)	일반용역비 (14)	- 공연단체 대상 순회공연 - 공연 연계 부대 프로그 - 홍보 대행 용역비 등		* 순회공연 용역비는 견적서 제출 필수

- ※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 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 (부가가치세 편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성 가능
-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에 대하여 (재)예술경 영지원센터 지정 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함
 - * 회계 검증 수수료 단가 (이외의 예산은 추후 협의)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회계검증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28,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89,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22,000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85,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633,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683,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731,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79,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82,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1,034,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1,225,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1,485,000

□ 지원신청

- ㅇ (신청기간) 2025년 10월 13일(월) ~ 12월 2일(화)
 - (공연단체) **10**.13.(월)~11.4.(화) 17:00 마감
 - (공연시설) 11.17.(월)~12.2.(화) 17:00 마감
 - * 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제출 불가
- o (신청방법) 공연예술유통 P:art:ner(https://gokams.or.kr/partner)
 - * e나라도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조건

- ㅇ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집행·정산
- 지원금은 공연시설에 교부되며,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지원조건에 따라 공연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례비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기준 안내서」의무사항 준수

- 사업참여자 역할, 참여 기간, 연령, 사례비 지급금액 등에 따라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및 신고·납부 필요
- 사업참여자 전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예방 교육 참여 후 교육 이수증을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관리 필요
- 사업참여자 전원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관리 필요
 - *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할 경우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 단계별 필수 제출서류

단계	제출대상	제출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공연 정보입력 메뉴]	
		① 공연 용역비 산출내역서	지정양식 활용(excel), 신청 시 첨부
		[제출서류 등록 메뉴]	
③ 단계	고선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My통계의 공
- 공연작품	공연	① 티켓매출액, 관객수 증빙자료	연통계(회차별)'에서 신청한 공연의 최근
유통 신청	단체		공연실적(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을 PDF로
			다운로드하여 , 신청 시 첨부
		②-1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서약서	기저야시 하요(hm) 시처 시 처브
		②-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⑤ 단계	공연 시설	①-1 공연신청내역서	기저아시 하으레 그 시청 내 청년
- 공연시설		①-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지원신청		② 공연시설 사업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⑦ 단계	공연		·
- 공연시설	단체	① 공연작품 유통희망 공연시설 신청서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선택	다세	117 70111111101	
9 단계	공연 시설	① 최종 공연신청내역	지정양식 활용(hwp), 신청 시 첨부
- 최종지원		② 예산계획서	지정양식 활용(excel), 신청 시 첨부
신청		(공연시설, 공연단체)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 처리

□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유통팀

- (이메일) promokams@gokams.or.kr, (전화) 02-708-2225
 - * 문의 가능 시간 : 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